



GLENVIEW SCHOOL DISTRICT 34
1401 Greenwood Road
Glenview, Illinois, 60026
www.glenview34.org

양육 정보

학부모님께:

별거나 이혼으로 한 명의 학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학교는 때로 자녀에 관한 특별한 요청이나 지시를 받습니다.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음 정보가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사안에 대한 해당 규칙과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는 비양육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공법 93-380, 가정 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법(FERPA) 및 Illinois 공공 입법 85-1389에 따라: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 학군은 학부모의 FERPA 권리를 특별히 제거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 양육권이 있든 없든 모든 친부모에 대해 동일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란 교육 기록에 접근을 금지하거나 자녀의 기록에 대해 알 학부모의 권리를 제거하는 승인된 법정 명령이나 기타 법률 서류를 말합니다. 승인된 법정 명령은 학부모가 학교에서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시기와 장소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학군이 법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특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정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자필 메모, 전화 통화 또는 등록 카드의 설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학교는 제한에 대해 설명하는 공인된 법정 명령 사본 한 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학생의 폴더에 보관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847-998-5005번 또는 학교 사무실로 전화하십시오. 법정 명령에 관한 법적 조치나 정보는 귀하의 변호사나 법정의 지원을 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ane Delli, Ph.D.
교육감